

2021년 충남 지역산업육성사업 신규 선정과제 사업비 사용 및 관련 법령 교육

2021. 9. 8.

“평가는 공정하게
지역은 풍요롭게”

Part

2021년 충남 지역산업육성사업 신규 선정과제 사업비 사용 및 관련 법령 교육

I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목차

- 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1. 총칙
-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3. 공통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 4. 사용절차
- 5.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승인
- 6.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이자의 사용용도
- 7. 연구개발비 정산·회수의 방법과 절차

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a.k.a. 혁신법)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률!

- Q1. 갑자기 왜?(=제정 배경)
- Q2. 적용 범위는?
- Q3. 구체적으로 지역사업평가단에서 맡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법률(규정) 따라야 하는지?
- Q4. 2021년 1월 1일 이후 협약 과제부터 적용되는지?

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 체계화하여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배경	부처별 관리규정이 산재되어 연구 현장의 행정부담 심화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01년 제정, 대통령령)]이 운영되어 왔으나, 법률에 우선 적용하지 못하여 규범력에 한계 존재
구조	총 5개 장, 41개 조. 하위 법령 및 규정으로는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9개 행정규칙
적용 범위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다르게 적용 가능
주요 용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정보, 연구지원, 국가연구개발활동, 기술료를 정의하여 용어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규정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연구비 사용, 평가, 보고서 제출 등에 대해서도 적용 다만 연구개발성과의 소유-활용, 법 시행 이전의 계약에 대한 기술료 징수,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등은 기존 규정을 적용
부처별 제도 운영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의 범위에서 법령 등이나 시책을 운영할 수 있으며, 법령 등의 제-개정 시 과기정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 체계화하여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구조	총 5개 장, 41개 조. 하위 법령 및 규정으로는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9개 행정규칙
시행령	5개 장 67조로 구성되며,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시행규칙	✓ 협약서, 보고서 등 각종 서식과 부정행위의 제보 및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마련 등의 조항을 규정
행정규칙(훈령, 고시 등)	<p>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p> <p>✓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고시) 2)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3)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고시) 4)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규정(예정) 5) 연구지원기준(예정) 6)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고시) 7)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규정(예정) 8)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고시) 9)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고시)</p>

1 총칙

규정의 취지 및 주요 특징

부처별·사업별로 운영하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기본 취지입니다.

기본방향	연구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기존 규정을 가급적 유지 부처별로 달리 운영되는 사항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명시적 규정없이 운영되는 사항은 실제 부처에서 관리방식 최대한 반영
기관 유형별 차별화	✓ 연구개발기관의 유형별 사용기준 차별화
인건비 행정 부담 경감	✓ 참여율 용어를 실제 의미에 맞게 인건비계상률로 변경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인건비계상률 입력주기 확대
학생연구자 처우 개선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운영의무기관 확대 학생연구자 실지급 인건비 확대
연구장비 및 재료 도입기한 완화	✓ 연구수행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장비 및 재료의 도입기한 완화

1 총칙

규정 전·후 비교

구분		전(~2020년)	후(2021년~)
규정 통일		부처·사업별로 기준 운영	범부처 통일 기준 운영
규정 방식		연구비 세목별로 규정	연구기관 유형별 구분 후 연구비 세목별로 규정
인 건 비	기관단위 관리 가능 여부	불명확	비영리-가능, 영리-불가능
	참여율 용어	참여율	인건비계상률
	인건비계상률 관리 단위	불명확	정부출연기관-연단위, 그외 기관-월 단위
	인건비계상률 입력 주기	매월 입력	기관의 회계연도 내 1회 입력
	참여율 130% 허용 기관	정부출연기관, 일부부처-전문생산기술연	정부출연기관, 전문생산기술연
	현금지급 가능 영리기관	중소기업 신규인력 지식서비스분야 연구개발서비스업 기타 부처 인정 경우	중소 및 중견기업의 신규인력과 기존인력 대기업의 신규와 기존인력 중 부처 인정 경우 연구성과 국유의 경우 기타 부처 인정 경우
	영리기관 현금지급비율	신설	(원칙) 연구비 현금의 50% 이내 (부처인정시) 50% 초과 가능

1 총칙

규정 전·후 비교

구분		전(~2020년)	후(2021년~)
학생 인건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기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학생연구자 보유기관
	참여율 산정재원	불명확	대학재정지원사업 인건비,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 등 인건비, 창업소득, 기타 단기소득 제외
✓	장비 도입 기한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원칙)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긴급상황) 과제종료 1개월 전까지 (장비구축과제) 과제종료 전까지
✓	재료 도입 기한	과제종료 전까지 (일부 부처)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과제종료 전까지
✓	SW 사용료 기한	과제종료 전까지	사용실적 보고 전까지
	간접비 기관단위 관리 가능여부	불명확	비영리-가능, 영리-불가능

연구비 사용시점

- 연구개발과제 계정에서 타 계정으로 이체되는 시점을 의미
예) 인건비 - 참여연구자 개인계정, 재료비 - 재료 판매업체의 계정, 간접비 -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 계정 등
- 연구비카드 사용시점은 연구비 사용시점이 아니며, 연구비 사용을 위한 절차 중 하나에 해당함

1 총칙

용어의 정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구개발기관	법 2조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과제비, 사업비, 연구비 X
영리기관	영 19조1항 각호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대기업
비영리기관	영리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통합Ezbaro(한국연구재단), 통합RCMS(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간접비비율	간접비비율=간접비/수정직접비 수정직접비=직접비-현물부담액-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
정산	연구개발과제의 해약, 종료시 연구개발비가 법 13조3항에 따른 사용용도와 법 13조4항에 따른 사용 기준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
학생연구자	학생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된 수료생 포함, 근로계약 체결한 휴학생 포함)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첫학기 시작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1 총칙

정산기준

연구개발비가 아래의 부담기준부터 이자의 사용용도까지 모두 부합하는 경우 적정사용 연구개발비로 인정됩니다.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영 제19조 제1항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영 제20조 제1항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사용기준 제5조 ~ 제72조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사용기준 제73조 ~ 제74조
이자의 사용용도	사용기준 제75조 ~ 제78조

경과조치

2020년 종료 & 2021년 정산 과제	중전규정 적용
연구개발기간이 2020.6.1~2021.2.28인 과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준수, 2020.12.31까지 집행분은 중전규정
다년도 과제인데 1,2차년도 정산을 이미 실시한 과제	정산안한 3차년도에 대해서만 정산 가능

1 총칙

기관별 책무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공통책무로서 **연구개발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과도한 규정해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책무

-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 포함)은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연구개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서는 안됨

연구개발기관의 책무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연구자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해야 함
- 연구개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서는 안됨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인건비 사용용도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연구근접지원인력 :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 본인부담금,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학생연구자

1. 대학 등의 연구개발기관 소속 학생연구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운영하는 학·연협동과정을 통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대전제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치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포함)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자체제작과 외부제작 모두 포함)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필요 비용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포함),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3.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숙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의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4. 출장비	국내외 출장비용(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비용 포함)
5. 소프트웨어 활용비	SW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6. 연구실운영비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SW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7. 연구인력 지원비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야근(특근)식대
8.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9.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및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밖의 비용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의 사용용도

연구수당 사용용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에서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연구개발부담비 사용용도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영 19조4항 각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4조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4조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간접비 사용용도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구성됩니다.

인력지원비 사용용도	
1.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연구개발능력성과급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력성과급
3.기타의 인력지원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연구개발과제 미참여기간동안의 비용) 1)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동안의 급여 2)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3)일시적 연구중단기간동안의 급여 4)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동안의 급여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간접비 사용용도

연구지원비 사용용도

1. 기관 공통비용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 운영비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비용

3.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1)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2)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

4.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2조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5. 연구보안관리비

1)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2) 기술자료 임차관련 비용
 3)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 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연구활동지원금

학술용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특정기관의 기본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비용 등 포함)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간접비 사용용도

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1. 과학문화활동비

1)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2)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3) 홍보전문가 양성
 4)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1)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2)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3) 표준활동에 필요한 비용
 4)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공통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공통사용기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수립	연구기관별 수립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이 종합하여 제출 가능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항목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총액만 작성하고 항목별 내역은 작성 불필요(연구시설·장비는 내역 작성)
연구개발비 지급방식 및 지급대행	통합Ezbaro(한국연구재단): 비영리기관-일괄지급, 영리기관-건별지급 통합RCMS(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모든기관-건별지급
연구개발비 공통계상기준	직접비: 해당 과제수행에 필요한 금액 계상 간접비: 여러 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금액 계상 그 밖의 경우 : 자체규정에 따른 금액 계상 가능(자체규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타 사업간 차이 금지)
연구개발비 계상불가 비용	환급가능한 세금, 유흥성 비용, 중복계상비용, 기관 내부거래, 계열사간 거래, 동일과제 참여 연구개발기관간 거래비용

3 공통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연구개발비 계상 불가 비용

1. 환급가능 관세, 부가가치세	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2. 주류 등 유흥성 비용	
3. 중복계상 비용	1)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 2)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 3)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
4. 중복계상 인건비·학생인건비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참여연구자의 입학, 졸업 등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연구개발기관내 및 기관간 비용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제외항목(=계상 가능 비용)	1) 대학이 같은 대학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 사용 비용 2)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특정한 경우 3) 정부출연 연구개발기관과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6. 인적·물적구분이 불명확한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3 공통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연구개발비 계상 가능 비용

연구개발기관내 및 기관간 비용

가능항목

연구개발기관내 계좌이체 가능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은 **계상불가**

- 1)대학이 같은 대학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숙박시설 등 부대시설 사용 비용
- 2)연구개발기관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중 특정한 경우
- 3)정부출연 연구개발기관과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1)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 2)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
 - 단독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상기 이외의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한 비용
- 3)비영리기관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하는 비용

3 공통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계상기준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입증기준

연구개발비 사용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함

검수기준

자체 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함

사용일기준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함

사용실적보고일까지 사용가능

- 1)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2)연구수당
- 3)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SW의 후불지급 사용액 포함)

사용형태기준

연구비카드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함(다만, 외국물품 수입 등 연구비카드·계좌이체 사용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현금사용 가능)

3 공통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기준

현물계상기준	현물 연구시설·장비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함
승인기준	사전승인 ⇒ 협약변경 후 사용하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원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2.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3.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ZEUS를 통해 무상 이전 받으려는 경우 제외) 4. 연구시설·장비 구축목적 과제의 경우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1억원기준	1억원이상(부가세 및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장비 구입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3천만원기준	3천원이상 또는 공동활용 가능 장비는 'ZEUS'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해야 함
구입·설치·임차기한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종료일 2.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중대한 사유 발생: 종료일 1개월전 3. 기타: 종료일 2개월전

3 공통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간접비 중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하여야 함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p>한도=직접비의 40%</p> <p>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p>
회의비	<p>연구개발기관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는 식대 계상 불가(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은 가능)</p> <p>증빙요건: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영수증</p> <p>단, 10만원이하의 회의비는 회의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대신 가능</p>
출장비	<p>공무원여비규정이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p> <p>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계상</p> <p>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계획서와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함</p>
SW활용비	<p>SW사용계약 체결기한(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포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 기본사업: 종료일 2.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중대한 사유 발생: 종료일 1개월전 3. 기타: 종료일 2개월전 <p>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는 SW사용계약기간의 경우 최소단위 소명하면 계약금액 전부 계상 가능</p>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

3 공통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인력 지원비로 **계상불가**한 비용

1.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 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계상 가능)
2. 참여연구자의 중신학회비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4.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5. 관련법에 따라 환급가능한 교육비
6.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3 공통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연구수당 사용기준

연구수당 한도

한도=수정인건비의 20%

수정인건비

- 1) 인건비(현물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제외)
- 2) 학생인건비
- 3) 미지급인건비(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 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함&미지급인건비계상을 입력 필요)

연구수당 증액 금지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 범위내에서 연구수당 계상 단, 원래계획상의 연구수당금액보다 **증액계상 금지**

미지급인건비계상률

미지급인건비계상률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함

연구수당 지급기준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평가 등 합리적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1인당 지급한도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명에게 연구수당의 70% 초과 지급 금지

연구수당 불인정

1. 정산결과에 따라 수정인건비가 감액된 경우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를 초과한 금액
2. 연구수당집행비용이 직접비사용비율을 20%이상 초과한 금액
(연구수당지급액X(연구수당지급비율-직접비사용비율-20%))

연구수당집행비용

=연구수당지급액/연구수당계상액

직접비사용비율

=직접비사용액/직접비계상액, 현물은 제외

3 공통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위탁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위탁연구개발비 한도	한도=(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의 40%
위탁연구개발비 증액	원래계획보다 20%이상 증액하여 계상 시 사전 승인 필요
위탁연구개발비의 사용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사용실적보고서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증명자료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함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사용	이체(또는 계정대체)된 금액 사용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따라야 함
사용실적보고·정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실적보고 를 받고, 정산·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함

3 공통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간접비 사용기준

인력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은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여야 함
연구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는 대학만 계상 가능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 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출연연 등은 인건비총액의 1% 이상) 계상하여야 함 연구활동지원금은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만 계상할 수 있음
성과활용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가능함(최장 10년까지 계상가능)

연구개발비사용액 부당회수 등 금지

정의	임직원 또는 참여연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에서 사용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
인건비부당회수 금지	1.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회수하여 관리·사용하는 행위 2.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회수하여 관리·사용하는 행위
사용용도 위반행위 간주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는 법 13조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를 위반한 행위로 봄

4 사용절차

연구개발비 사용절차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일괄지급대상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부터 5일 이내 그 밖의 경우: 사용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건별지급대상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카드를 결제한 날부터 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 그 밖의 경우: 사용하기 전
일괄지급대상과제의 인건비	다음 기준에 따라 입력할 수 있음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연구수당 등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1)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연구수당 3)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SW의 후불지급 사용액 포함)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후 1개월 이내

4 사용절차

연구개발비 사용절차

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	연구개발기관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날부터 협약 체결일까지 중 하루
협약체결·연구개발비 지급 지연	연구개발기관 시작일부터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자체재원 활용 인정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후 5년간 보존

전/후 비교

구분	전(~2020년)	후(2021년~)
사용내역 보고 방법	신설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연구개발 시작일	신설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날까지
연구비 지급지연시 자체재원 사용	신설	연구개발기관 자체재원 사용을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인정
증명자료 보관 방법	영수증서에 대하여만 전자적 보관 명시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해당 규정을 따라 보관가능

5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승인

사전승인

사전승인 대상

- 1.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
- 2.연도별 정부지원금액 또는 기관부담금액 변경(현금과 현물의 변경 포함)
- 3.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 증액
- 4.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 변경
- 5.연구시설·장비비 변경
 - 1)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원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 2)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 3)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ZEUS를 통해 무상 이전 받으려는 경우 제외)
 - 4) 연구시설·장비 구축목적 과제의 경우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 6.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 이상 증액
- 7.국제공동연구개발비 변경
- 8.해당 단계의 직접비(현물 제외)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로 이월

6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이자의 사용용도

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

연구개발기간동안의 이자

사용가능 용도

- 다음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함
- 1.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 2.연구개발에 재투자
 - 3.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 4.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만 해당)
 - 5.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만 해당)
 - 6.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만 해당)
 - 7.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연구개발기간 종료후 이자

국고에 납입하여야 함
다만, 위 4,5,6은 사용가능

정부지원금이자 산출기준

정부지원금이자 = 총 연구개발비 이자 X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비 중 현금)

7 연구개발비 정산·회수의 방법과 절차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비 정산 대상

1. 정부지원 금액
2.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금액
3. 그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금액
4. 정부지원금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한 금액

연구개발비 정산 기준

간접비 등 인정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확인 필요!

통합관리계정에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다음의 경우 적정 사용 연구개발비로 인정할 수 있음

1. 비영리법인에 지급된 간접비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 지급된 학생인건비
3.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 지급된 연구시설·장비비

협약해약시 간접비 잔액의 산출

1.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되는 경우: $\max(A, B)$
 $A = \text{간접비 월할계산 금액(말월산입)}$
 $B = \text{간접비총액} \times (\text{간접비집행비율} - \text{직접비집행비율})$
2.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 B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1.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2. 자체 규정을 적용하여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경우 해당 자체규정을 함께 제출해야 함
 3. 현물부담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현물부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현물로 적정하게 부담한 것으로 봄

7 연구개발비 정산·회수의 방법과 절차

연구개발비 정산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1. 정산실시전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그 결과 사용용도나 사용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2.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회수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에 착수하여야 하고, 회수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함
2.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수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연구개발비 회수액

직접비 사용 잔액

+ 간접비 사용 잔액(협약해약시 간접비 사용잔액, 공기업 이외 기업의 간접비 사용잔액)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액

+ 직접비 집행비율 50% 이하 과제의 간접비총액 \times (간접비집행비율 - 직접비집행비율)

= 연구개발비 회수 대상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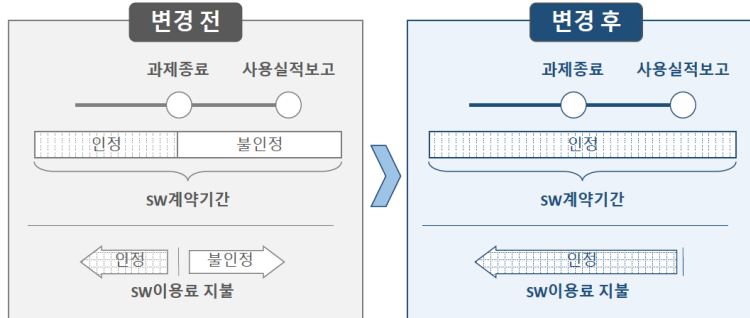
X 정부지원금 비율

+ 현물부족 부담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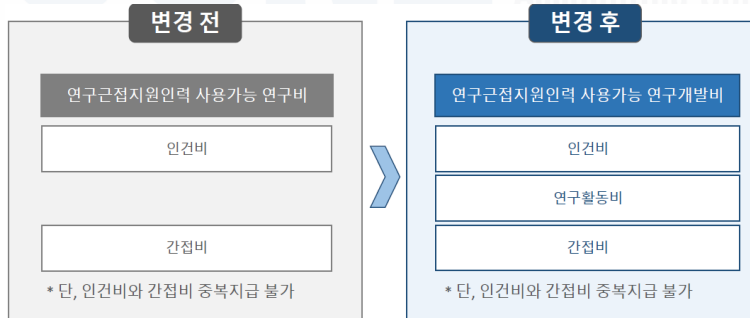
= 총 연구개발비 회수액

✦ 중요 사항 요약_국가연구개발혁신법

1. SW이용료: 전제> 과제 종료 2개월(긴급상황시 1개월) 전까지 구입



2.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구활동비 사용 가능, 연구수당은 여전히 불가



© 2021 DoOne Accoun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The DoOne logo and name are trademarks of DoOne Accounting Corporation.

34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_개정 유의사항

[별표 3] 사업비 산정 기준

****R&D 사업의 경우와 비R&D사업의 경우로 나누어 명시**

1. R&D 사업의 경우

<인건비>

- 미지급인건비 개념 도입(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 영리기관의 경우에만 현물 계상 가능) < 비R&D 없음
- 외부인건비 개념 비R&D와 상이(R&D: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기업,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의 정규직원 계상 불가)

<연구시설장비비>

- 해당 과제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함+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협약계약서에 반영된 후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구입 가능
>> (비R&D: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를 영리기관의 경우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체 규정의 구매절차를 통한 집행 인정)
- VAT포함 1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서 제출
- VAT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 제출
- VAT포함 1억원 이상: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별표7) 연구시설장비비 또는 연구재료비는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이전까지 구입완료분에 한하여 인정

*[별표 7]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R&D 사업의 경우_열거 >> 비R&D 사업의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R&D사업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 혁신법과 상충

© 2021 DoOne Accoun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The DoOne logo and name are trademarks of DoOne Accounting Corporation.

-1-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_개정 유의사항

유의사항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운영비 << 비R&D는 연추비 있음
 - 여비 포함한 개념이며, 직접비(현금+현물) 10% 이하로 산정<< 산혁규정과 상이
 - 회의비: 다과, 식대 -> 1인당 1식 3만원 이내
 - (별표7)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필요(VAT포함 10만원 이하는 예외)
 - 초과 근무 식대: 1인당 1일 1만원 이내

<연구수당>

- (현금+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계상(중소중견은 최소 10%이상, 타용도 변경 불가)
- (별표7)당해연도 수행기간 종료 후 지급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_협약 변경

[별표 7]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_2. R&D 사업의 경우_2) 전용기준

~에서	~로	내부기준 인건비	신규 인건비	외부 인건비	연구시설장 비비 및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
내부기준인건비			자체변경	승인	자체변경	X	X	X
신규인건비	X			X	X	X	X	X
외부인건비	승인		자체변경		자체변경	X	X	X
연구시설장비비 및 연구재료비	X		승인	X		승인	X	영리,승인
연구활동비	X		자체변경	X	자체변경		X	영리,승인
연구수당	X		자체변경	X	자체변경	자체변경		영리,승인
간접비	X		자체변경	X	자체변경	자체변경	X	

3. 비R&D 사업의 경우 >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R&D사업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Always Thanks for your interest toward ...



“평가는 공정하게
지역은 풍요롭게”

Part
II

2021년 충남 지역산업육성사업 신규 선정과제 사업비 사용 및 관련 법령 교육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의 이해와 학습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의 이해와 학습



2021. 9. 7~8.

이재훈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변호사

Contents



- I. 개요 – 규정/제도의 특성 이해
- II.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탄생
- III.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이해
- IV.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학습
- V.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방향

Chapter I



개요 - 규정/제도의 특성 이해

1 2 3 4 5 개요 - 규정/제도의 특성 이해

법, 규정, 제도에 대해 잘 아시나요? 법잘알



1 번 문제

법이나 규정은 쉽고 빠르게
개정할 수 있다.

맞으면

O



아니면

X



4

연사 소개

이재훈(gq5974@korea.ac.kr)

학 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학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고려대학교 기술경영학과 박사

경 력 現 고려대학교 기술경영학과 겸임교수
現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변호사·연구위원
前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위원
 現 (주)파운트투자자문 비상근감사
 現 (주)아츠앤컬처 문화칼럼니스트
 現 부산광역시 규제자유특구(블록체인) 법률자문위원
 現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선정 민간위원
 現 법무부 마을변호사
 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분과장)
 前 법무법인 강호 소속 변호사(IP,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前 서울대학교 혁신설계 및 통합생산 연구실 연구원

안전관리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들

연구실, 실험실 등에 대한 안전 제도, 안전 규정에 문제가 꾸준히 제기될 수 없는 사건들



19년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17년 지열발전연구의 포항 지진 촉발



15년 실험실 액화질소 누출사고



13년 ○대학 화학실험 중 대형화재



13년 실험장비 설치 중 폭발 사망사고



13년 ○대학 유해물질 누출(2,000여명 대피)

수많은 절차들 (feat. 국회 과방위 전문가 공청회 진술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인 **공청회 발제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이재훈 변호사, 2018.11.16)



고 위험한 유해인자를 활용한 새롭고 모험적
사고위험의 범위와 크기를 사전에 예측하기
한 공간

관리체계를 수립하고자 2005년 「연구실 안전
안전법」을 제정하여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

드디어 2021년! 이제야 2021년?



'연구실안전법' 올해 이렇게 달라진다

기사입력 2021.01.05. 오후 12:23 최종수정 2021.01.05. 오후 12:23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 설정

👍 3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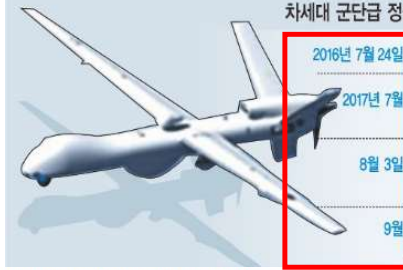
요약본 가 📄 🗨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국가전문자격제도' 신설

(지디넷코리아=김태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제·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 활동 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연구과제 중 드론 추락에 대한 손해배상을 연구자에게?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UAV-II) 추락사고 및 조치 경과

- 2016년 7월 24일 UAV-II 논산 육군항공학교 활주에서 첫 비행을 위해 이륙도중 추락
- 2017년 7월 방사청 감독관실 사고 원인에 대한 검토보고서 완성
-ADD 비행제어팀 전원에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결론
- 8월 3일 ADD, 방사청에 '검증결과에 대한 재검토 요청' 공문 발송
-연구원에게 민사상 책임까지 묻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 포함
- 9월 방사청, 연구팀 중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 입장 고수
-ADD는 조만간 자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연구원 징계방안 결정

방위사업청이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고한 '군단급 UAV-II 시제 1호기 추락사고 검토 보고서' 등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4일 충남 논산 육군항공학교에서 UAV-II 초도비행이 이뤄졌다. ADD가 개발을 주관하는 UAV-II는 현 군단급 UAV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2012~2017년 1180억원이 투입된다. 그런데 초도비행에 나선 무인기가 이륙 직후 왼쪽으로 쏠리더니, 활주로 끝단에 불시착했다. 이 사고로 무인기 동체가 완파돼 6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감독관실 조사결과 ADD 비행제어팀 소속 담당자가 무인기의 고도·속도·풍향을 측정하는 장비의 좌표 신호체계를 반대로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무인기 오른쪽에서 바람이 불면 측정 장비가 이를 인식해 무인기가 우측으로 반응해야 한다. 그러나 신호가 반대로 입력돼 있다 보니 좌측으로 반응했고, 무인기는 결국 균형을 잃고 추락했다.

감독관실은 연구팀 담당자가 측정 장비 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비행제어팀장 이모씨를 비롯한 팀원 5명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고, ADD 인사규정 제21조(손해배상 의무)에 의거해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난 7월 ADD에 통보했다. 팀원들이 전적으로 동체 파손 배상을 부담한다면, 1인당 13억원이 넘는 거액을 물어내야 한다.

ADD는 방사청 입장에 불복해 지난 8월 3일 방사청에 '검증결과에 대한 재검토 요청' 공문을 보냈다. ADD는 무기체계 개발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이를 보완하는 것은 일반적인 과정이고, 연구개발 중 발생한 일로 연구원 개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방사청은 연구팀 중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DD는 조만간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연구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ADD가 상급기관인 방사청의 요구를 무시하기도 어려워 손해배상 요구 등이 확정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제공내??

MT 머니투데이

"연구중 발생한 자산손실에 손배청구 못한다"

16면 1단 | 기사입력 2018.03.08. 오후 4:00 | 기사원문 | 스크랩 | 본문듣기 · 설정

9

13

요약본

가

다

나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과기정통부,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 보고]

지난해 7월,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드론(무인기) 1대가 시험 비행 도중 추락했다. 다음 해 7월 방위사업청은 이 연구를 주도한 국방과학연구소 비행제어팀 연구원 5명에게 중징계와 함께 1인당 13억원씩 총 67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통보했다. 이 같은 가혹한 조치가 한 언론사 보도로 알려지자 이 징계를 다시 심의해 달라는 요구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현재까지 2만 여명이 청원에 서명했다.

납시성 제목이었...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집행 검수 절차가 논란이 되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 비리나 고의적인 중과실이 아닌 경우, 연구자가 R&D 도중 입힌 자산손실에 대해 연구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 기술·시장의 환경 변화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의 필요성이 사라질 경우에도 연구비 환수 등 절차 없이 관련 연구를 중단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R&D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국가 R&D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험설비·장비 파손 등의 자산손실에 대해서는 몰래 암시장이나 외국 기업에 팔아넘기는 연구자 비리나 고의적 불법행위·중과실이 아닌 경우 연구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현행 법·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규정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정책과 제도는 안정성, 지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끊임없이 변화

- 정책은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적응과 학습과정을 통해 제도를 변형시켜 나감
- 정책과 제도는 서로가 외부환경으로부터 주어진 외부적 변수가 아니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변형시킴

정책과 제도의 형성 순환 과정



정책과 제도의 특성으로 인한 필연적인 현장 적용 시차 문제



법은 완벽을 향해 한 방향으로 향해한다?



2 번 문제

완벽한 법이나 규정은 존재한다.

맞으면

O



아니면

X



돌고 돌고~ 도는♪~♪♪

연구실 안전점검 중복 규제 없앤다

김보현 | 승인 2019.11.19

정병국 의원,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대표발의
차량에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시 관련 안전교육 이수자도 입회 가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한 연구실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자체 점검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을 상·하차 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이외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도 입회가 가능하도록 했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한 연구실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 점검을 제외하도록 했다.

Chapter II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탄생

● ●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탄생

과기부장관하고 협의 없으면 제정, 개정을 못한다!?



3 번 문제

산업부장관, 중기부장관, 복지부장관 등 모든 장관, 처장 등은 각 부처의 국가R&D사업 추진에 관한 어떠한 규정이라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를 꼭 거쳐야 한다.

맞으면

O



아니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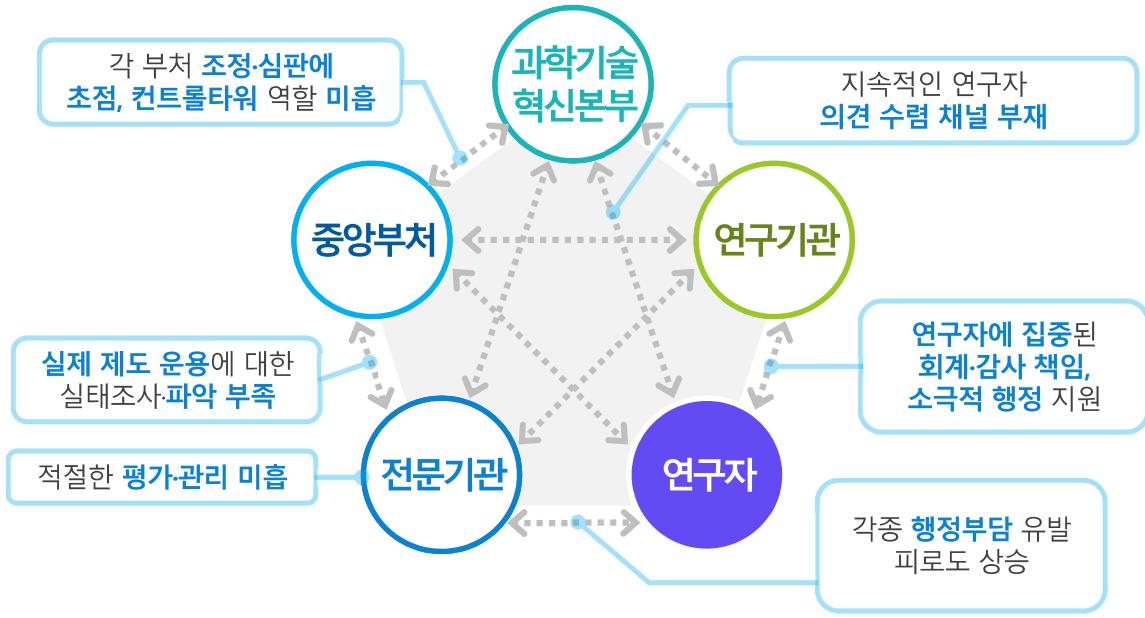
X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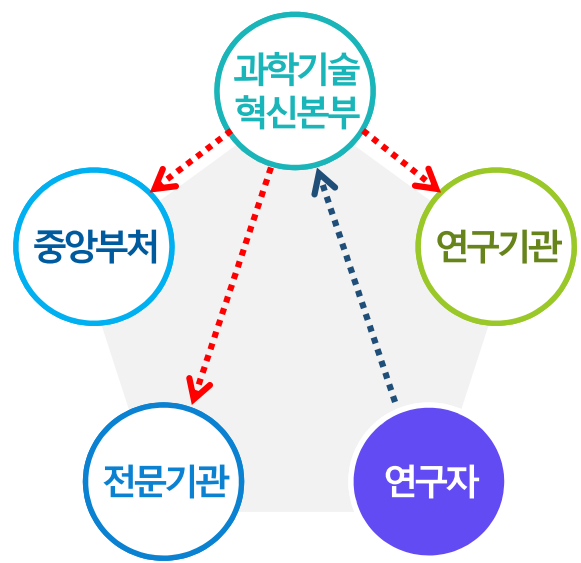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것들

연구자에게 책임과 부담이 집중되는 “공급자” 중심의 생태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것들

체계 일원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특별법? 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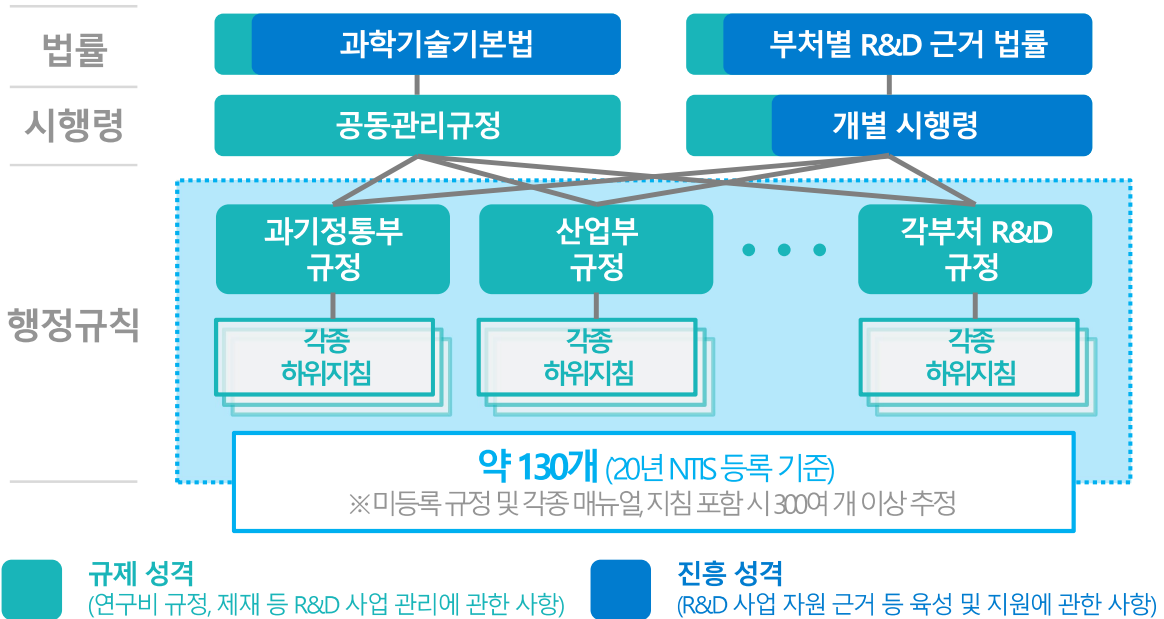
4 번 문제

특별법과 일반법 중에서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며, 기본법과 개별법 중에서는 개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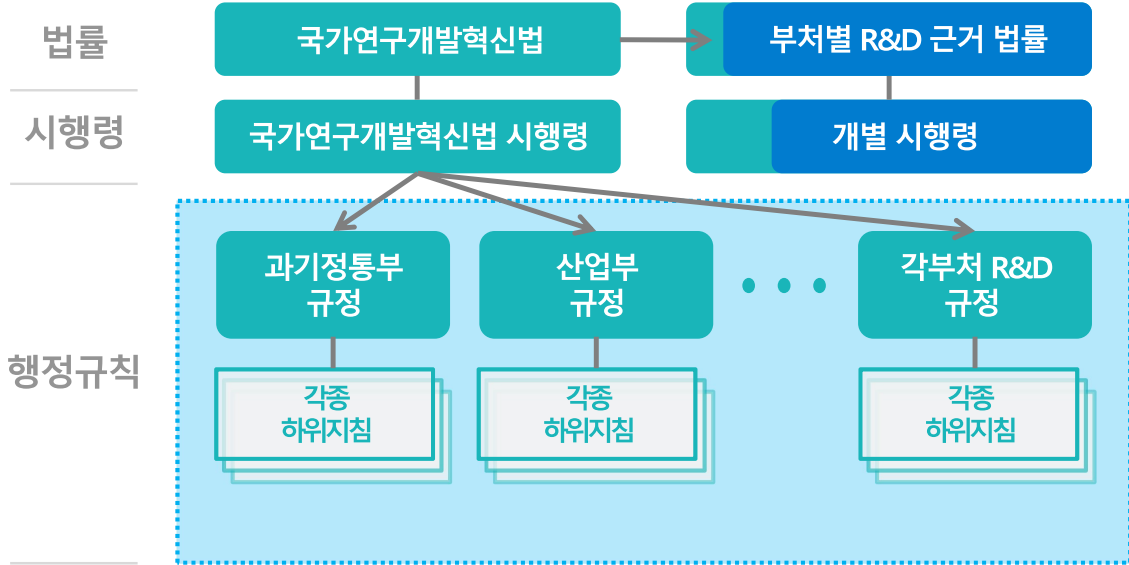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것들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은 **낮고 복잡한 R&D 관리 법 체계**에서 기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것들

이제 차근차근 시작 단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계

부처별 훈령·예규·지침

부처별 개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대한 세부 규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규정 운영현황

부 처	세부규정
교육부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경찰청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기상청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산림청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통합이라는데 통합이 2개?



5 번 문제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과 별도로 연구개발비의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통합이지바로(통합Ezbaro)만 운영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것들

10년 이상 구호로 그친 “선도형·연구자 중심 R&D 시스템 전환”

각 부처의 ‘분산형·칸막이식’ R&D 사업 운영 → 고비용·저효율 구조 고착화

▶ 국내 대학은 연평균 8.2개, 출연연은 4.7개의 전산시스템에 각종 자료와 정보를 중복·반복 입력



정출연, 대학, 민간회사는 법 적용이 다르다??

6 번 문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은 정출연, 과기정출연 특정연,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이 포함되며, 영리 목적으로 설립한 민간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맞으면

O

아니면

X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의미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의 규정을 통합·체계화하고, 연구자가 행정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혁신법이 제정

연구자 중심
연구개발사업
추진 전반 개편

- ✔ 기존 R&D규제 혁파 방안의 내용을 입법화
- ✔ 필연적인 현장 적용 시차 문제 최소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연구행정부담
경감

- ✔ 전부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현실화
- ✔ 전문기관 내실화

도전적 연구
장려와
연구책임성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의 총괄 명확화
- ✔ 국가R&D과제 선정부터 정산까지 과정 일원화

Chapter III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이해

● ○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이해

이제 과기법, 공동관리규정은 안봐도 된다?



7 번 문제

공동관리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연사=국연사규정)은 2021년1월1일부로 없어졌다.

맞으면

O



아니면

X



30

기존 법령과의 관계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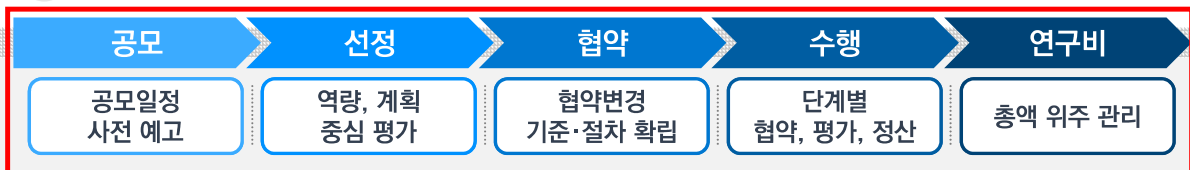
혁신법 제정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중 5개 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삭제되었으며, 해당 내용은 혁신법으로 이관

과학기술기본법	혁신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제1항 제외)	법 전반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제1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6조의2(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1항 제외)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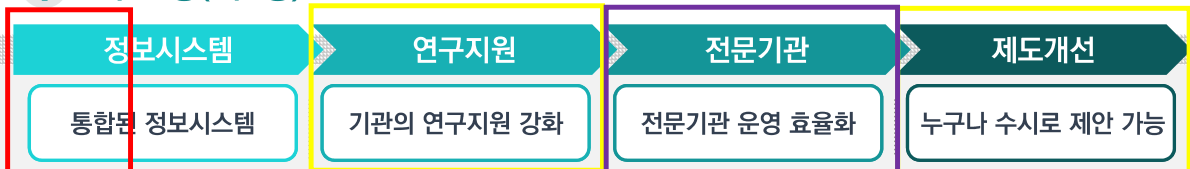
3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계 및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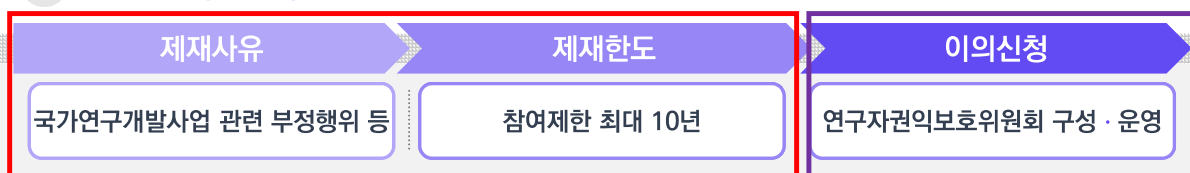
연구절차(제2장)



연구환경(제3장)



연구윤리(제4장)



3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규정

하위 법령 및 행정규칙들은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9개 행정규칙

시행령은 5개 장 67개 조로 구성되며,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시행규칙은 협약서, 보고서 등 각종 서식과 부정행위의 제보 및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마련 등의
 조항을 규정

행정규칙(훈령, 고시 등)에서는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행정규칙명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고시)	법 제13조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법 제13조, 제20조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고시)	법 제19조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규정 (예정)	시행령 제21조
연구지원기준 (예정)	법 제24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고시)	시행령 제31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규정 (예정)	시행령 제56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고시)	시행령 제59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고시)	시행령 제60조

공공기관 중에서도 과기정출연은 확실히 다르다??



8 번 문제

과기정출연기관들은 타 법률에 연구개발
 과제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혁신법
 상 연구비사용이나 제재조치 등에 대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으면

O



아니면

X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의 적용 범위

아래 사업들은 타 법률에 관련 내용이 있으면 타 법률을 적용

아래 사업의 경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법 제4조)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따른 기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②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 「학술진흥법」에 따른 교육부 소관 학술지원사업

③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대학혁신지원, 전문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4세대 두뇌한국(BK)21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로열티(기술료), 연구자 보상, 성공적



9 번 문제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결과로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기관이 이를 제3자에게 사용토록 하고 이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그 중 일부는 참여한 연구자의 보상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맞으면

O



아니면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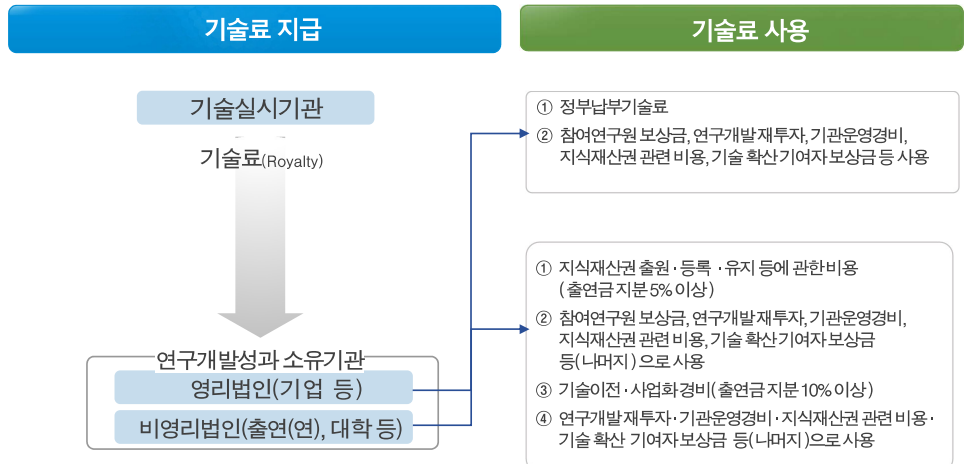
기술료와 소위 정부납부기술료

기술료 개념

목적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기술료 제도 운영 체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10 번 문제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이나 해당 기관의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공동활용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맞으면

O

아니면

X



11 번 문제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원칙적으로 소유하며, 수행 연구기관은 소유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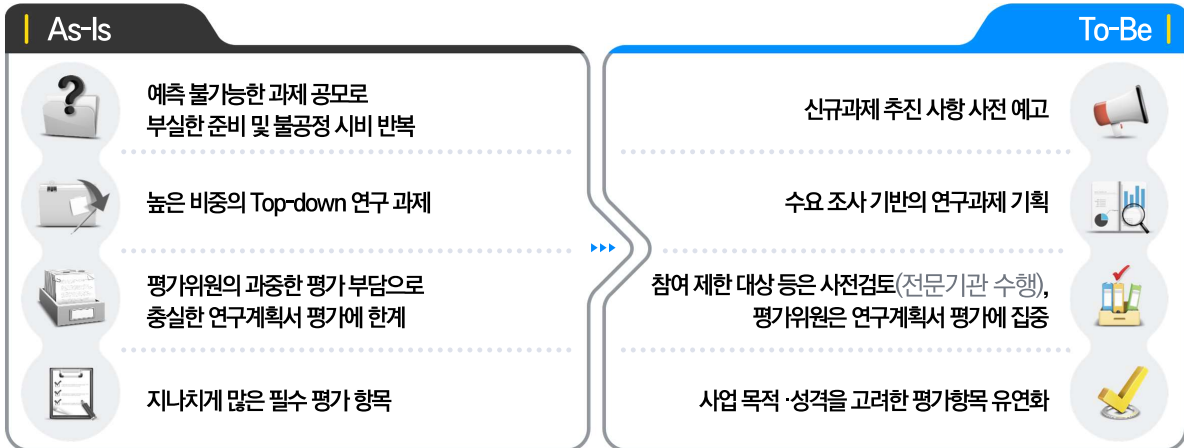


Chapter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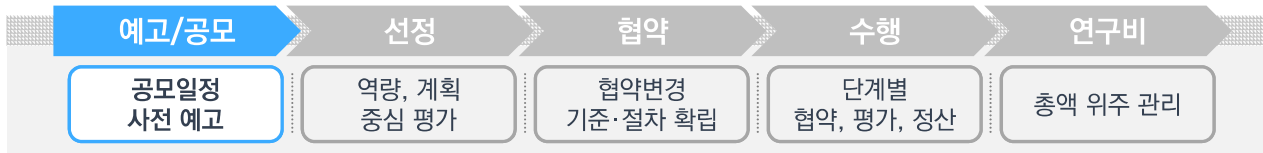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학습

1. 과제 공모 및 선정 프로세스 개선



- 제9조** ① .. 매년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 **목적·성격을 고려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구절차(제2장) - 예고



법률

중앙행정기관의 예고 의무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말한다)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예고 항목 및 예고 기간

제6조(예고)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이하 “연구개발비”라 한다)
3.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지원(支援) 내용 및 기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예산안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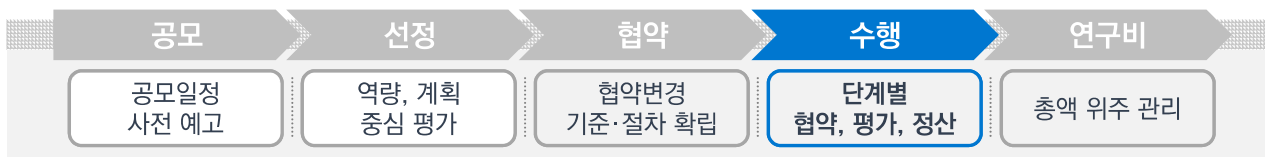
2. 불필요한 행정 규제 혁파

As-Is	To-Be
<p> 관례적 연차 협약, 경미한 사항까지 협약 변경 요구</p> <p> 비목 별 물량 X 단가 중심의 비현실적 연구비계획서 요구</p> <p> 부처·사업마다 다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모호한 인정·불인정 기준으로 연구현장 혼란</p>	<p> 과제 착수 시점 1회만 협약, 경미한 사항은 보고로 협약 변경 같음</p> <p> 개괄적 연구비계획서 제출로 유연한 연구비 사용 가능</p> <p>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고시, 인정·불인정 기준 명확화로 연구현장의 혼란 최소화</p>

제11조 ① .. **협약의 기간은.. 해당 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 계획을 포함한다)
③ ..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간의 통보로 ..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비·간접비의 계상 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절차
2. 연구개발기관 별 간접비 계상 기준
3.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변경을 위해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연구절차(제2장) - 수행(협약, 평가 등)



법률	시행령
<p>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실시</p> <p>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는 단계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p>	<p>평가 항목 및 보고서 포함 사항</p> <p>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5.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단계평가(이하 "단계평가"라 한다) 이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p> <p>제18조(보고서의 제출) ③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4.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p>

보고서 제출과 평가

	혁신법 전	혁신법 후
보고서의 제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의무화, 세부내용과 제출기한 명문화
단계·최종평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의 활용 계획·실적에 대해 평가 단계·최종평가(성과평가) → 실패 시 중단 및 제재조치 → 예외적으로 성실수행 인정 시 제재조치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 단계·최종평가(성과 및 과정평가) →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중단 및 제재조치

-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수행과정·수행내용 및 결과, 과제 수행계획 등에 대하여 매년 연차보고서,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보고서,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
- ☞ 단계 및 최종평가 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 ☞ 단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음
-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거나 연구책임자에게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된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평가를 거쳐야 함

누구에게 직접, 간접?



12 번 문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간접비라고 부른다.

맞으면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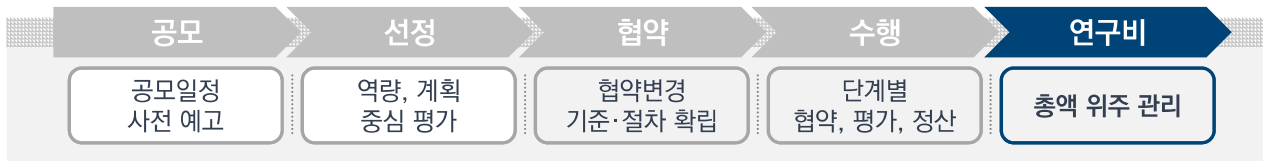


아니면

X



연구절차(제2장) - 연구비



법률

협약 체결 시 개괄적인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포함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시행령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비목 및 세목)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부처별·사업별로 운영하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대해 통일된 기준 마련

- ☞ 연구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기존 규정을 가급적 유지
- ☞ 부처별로 달리 운영되는 사항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 명시적인 규정 없이 운영되는 사항은 각 부처와 연구현장의 부담이 없도록 실제 부처에서 관리하는 방식을 최대한 반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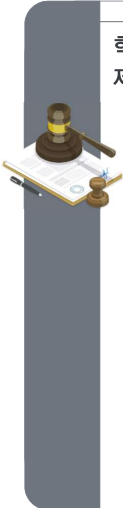
- ☞ 공통 사용기준
- ☞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별도 기준
- ☞ 대학에 대한 별도 기준
- ☞ 기타 비영리기관에 대한 별도 기준
- ☞ 영리기관에 대한 별도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기부 고시)

제정 이유(과기부 고시 제2020-106호, 2021.1.1.제정, 2021.1.1.시행)

정부출연연구기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사용·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혁신법 제13조

-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간접비의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절차
 2.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및 사용 기준 규정(제5조부터 제69조까지)

직접비와 간접비의 사용용도



고시 제5조

- ①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인건비 사용용도

1. 참여연구원 및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2. 참여연구원·연구근접지원인력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원·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3.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과 관련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및 사용 기준 규정(제5조부터 제69조까지)

연구활동비 사용용도(고시 제10조)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를 제외한다)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및 강사료를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
3.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숙기로, 통역료, **회의비 등(식비를 포함한다)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4.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참여연구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국내·외 출장 비용
5.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이용료 등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7.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참여연구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야근 및 휴일근무 식대 등**
8.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 비용
9.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제세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각종 연구개발비 사용에 따른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제반 비용

연구개발비 사용절차 규정(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고시 제71조)

제71조(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할 때에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을 연구개발기관 선정통보일부터 협약 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고시 제72조)

제72조(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화문서인 경우에 **그 증명자료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연구개발비 정산 등 방법과 절차 규정(제79조부터 제85조까지)

제81조(연구개발비 정산 방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산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나 증명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 정산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산을 실시할 때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72조제2항에 따라 보관되는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대한 출력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연구자의 권익은 법률로 보호

As-Is

-  선정평가에만 이의신청제도 운영
-  연구개발기관이 모든 성과 소유 원칙
-  제재 재검토 요청 시 동일기관에서 재검토
-  연구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연구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

To-Be

- 모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보장
- 유형을 고려한 연구성과 소유권 인정
- 제3의 독립기관(연구자 권익보호 및 부정방지 위원회) 재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 처분
- 연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 단, 인명손해, 고의중과실 제외

- 제14조 ⑥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6조 ①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 유형, 참여 유형,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 제33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설치된 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 제36조 연구개발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형자산의 손해에 대하여 해당 연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성실하게 연구했다면 실패? 성공?

13 번 문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종전의 '성실실패'라는 용어는 사라지게 되었다

맞으면

O

아니면

X

55

세부 제도 변화와 의미

성실실패라는 규정은 삭제

- ☞ 혁신법은 '연구개발과제의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를 제재사유로 두고 있음
- ☞ 혁신법은 결과만 불량한 경우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의 성실실패 규정은 사라짐
- ☞ '과정'의 극히 불량 여부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최종평가시 '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와 함께 평가

제재처분에 대한 면제 불가능

- ☞ 혁신법에서는 제재처분의 면제에 관한 근거 규정은 두지 않아 면제조치는 할 수 없음.

제재처분 종류 변경

- ☞ (종전)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 (변경)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56

성실하게 연구했다면 실패?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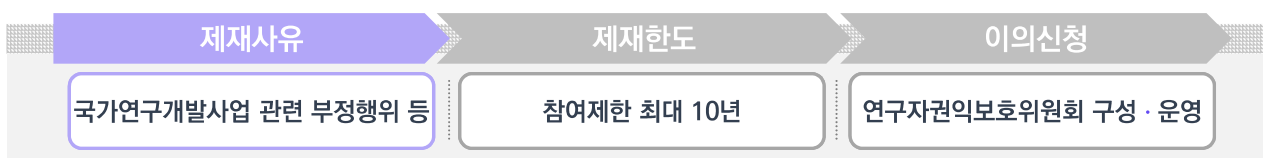


14 번 문제

과제 수행 결과에 대하여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는 저자부당표시 행위지만,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저자부당표시행위가 아니다.



연구환경(제3장) - 연구윤리(제재사유)



법률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유

-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하 생략)
1. 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 보안사항 유출 등)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미납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미납

시행령

제재처분 사유의 구체화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누구에게 직접, 간접?



15 번 문제

과기부 장관에게 연구과제 참여제한 처분을 받으면, 모든 부처의 연구과제 참여가 제한된다

맞으면

O

아니면

X

연구환경(제3장) - 연구윤리(이의신청)

제재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등

제재한도

참여제한 최대 10년

이의신청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 운영

법 률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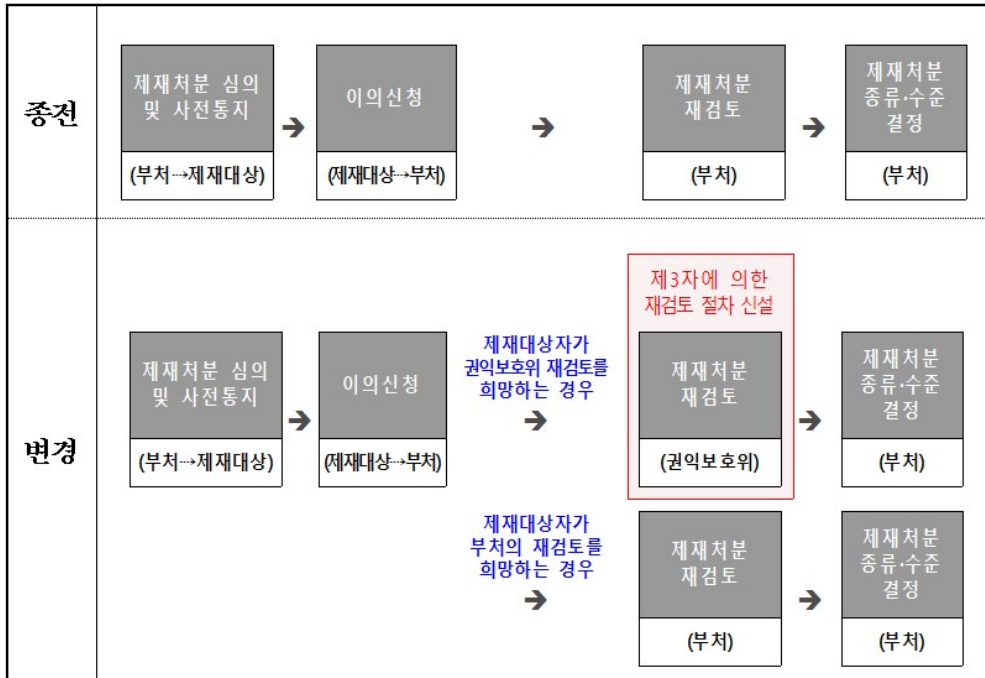
시행령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6조(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이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4.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신설에 따른 제재처분 절차의 변화



Chapter V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방향



디지털타임스

2020년 06월 03일 수요일 023면 오피니언



포럼

이 재 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변호사·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가R&D혁신법 ‘연구혁명’ 부싷들 돼야

춘추전국시대는 ‘극도의 혼란기’를 비유할 때 쓰인다. 국가R&D규정도 어찌 보면 춘추전국시대와 같았다. 부처별·사업별로 100여 개의 고시·훈령·규정 등 행정규칙이 시행돼 관리체계가 복잡하고 상이하다 보니 연구자들의 불편과 부담이 컸다. 국가R&D규정의 춘추전국시대는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통일됐다. 연구개발 통합법 제정 시도가 불발된 지 20년 만이다. 이제부터 국가R&D과제에 관한 프로세스는 혁신법 제정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혁신법 제정 이전에는 R&D 혁신의 방향성과 철학, 국가R&D과제 관리에 관한 종합적 기준을 담은 기본법이 사실상 없었다. 과학기술기본법의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시작한 R&D과제 공통규정만으로는 각 부처와 사업별로 R&D과제 관리규정을 운영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혁신법 제정으로 이제 ‘기획-선정-수행-평가-보상-행정’의 국가R&D과제 수행 전 단계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이 이뤄진다. 연구자의 자율·창의를 확대하는 동시에, 각 부처의 개별 국가R&D 관리규정을 일원화한다. 모든 국가R&D과제에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을 확립해 우리나라 최초의 R&D규정 현하통일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R&D과제 수행과정 전반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부담이 제거된다.

혁신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R&D사업의 추진에 관해 다른 법률보다 혁신법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각 부처는 소관 국가R&D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령 및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훈령·고시·지침 등을 제정·개정·폐지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협의해야 한다.

둘째, 각 부처는 국가R&D 관련 법령 등이나 각종 시책을 운영하되, 이에 대한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의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혁신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누구든지 각 부처의 R&D제도에 대해 개선을 제안할 수도 있다. 또한, 각 부처는 연구관리전문기관별·연구기관별 내부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돼, 개별 연구기관별로 운영하는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연구자를 불편하게 하는 문제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

셋째, 국가R&D과제는 예측 가능하면 시도 수요를 고려한 공모 추진이 원칙으로, 신규 과제 추진 등에 있어 사전예고를 통해 과제 기획과 수행의 내실화를 추구한다. 연구자들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단일 창구에서 R&D과제 정보를 열람하고, 미리 연구진을 구성하고 연구

계획을 구상해 초기 과제 수행 준비를 탄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R&D과제의 추진목적·성격 등을 고려해 연구개발비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방법 등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는 국가R&D과제 참여제한 등의 제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먼저 해당 부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연구자 권익보호·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의 조정을 거칠 수 있다. 제재처분 심사 시 연구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행정소송 외에 선택할 수 있는 구제절차로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혁신법은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내년 1월 1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준비하려면 6개월은 길지 않다. 혁신법 시행령에는 각 부처 R&D과제 관리에 공통 적용되는 세부사항들이 기술될 것이다. 부처별·사업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 규정을 두는 예외도 허용 가능하겠으나, 부처별 특성을 반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입법 취지 중 하나인 규정 간소화를 위해서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개별 부처-연구기관-연구자’로 구성되는 국가R&D 주체 간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결국 핵심은 연구자

‘연구자 중심 R&D 혁신’을 위한 혁신법 시행일은 ‘21년1월1일
연구자에게 혁신법을 성장시켜 나아가야 할 의무와 권리 존재

적극적 대응

→ 완벽한 법률은 없으므로, 지속적인 수정 보완 필수
 연구 현장에서 적극적인 법률 이해와 정확한 대응 필요

규제 주시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개별 하위령이나 규정이 규제로 작용할 수 있음

지속적 관심

→ 연구자의 권리보장과 함께 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관련 R&D
 규정이 개선되어야 할 제도·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 지속

Thank you

감사합니다



